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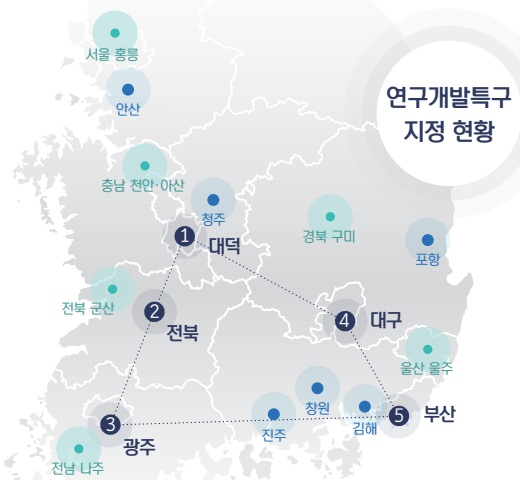
특구육성을 통한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주요임무

| 연구개발특구법 제 1조 | | 연구개발특구법 제 2조 |
|---|---|--|
| 목적 | 기대효과 | 개념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력을 활성화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



연구성과 사업화 +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발특구 5개 강소특구(19) 6개 강소특구(20) 6개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 창출의 중심지

INNOPOLIS⁺
ANSAN INNOVATION CLUSTER
경기안산강소특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강소특구육성1팀)
15588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55 산학협력관 305호
☎ 031-400-4874 ☎ 031-400-4879

한양대학교 ERICA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
15588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55 산학협력관 208호
☎ 031-400-4872, 4877-8, 4983 ☎ 031-400-4941
✉ ericainnotown@hanyang.ac.kr
🏠 <https://ericainnotown.hanyang.ac.kr/>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MAKING THE FUTURE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기술 실증특례?

신기술 실증특례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19조2]

INNOPOLIS
SANDBOX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R&D 특구로 지정·육성하여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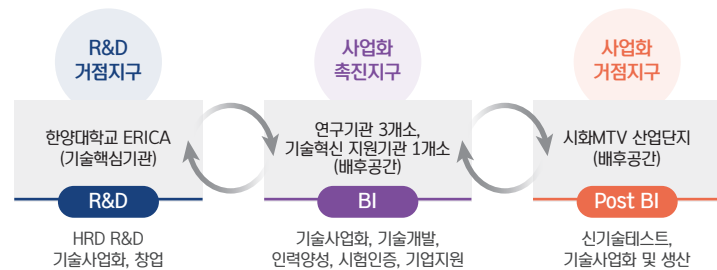
개요

- 지정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단원구 성곡동 일원
- 기술핵심기관** 한양대ERICA 캠퍼스(R&D거점지구)
- 배후공간** 사업화촉진지구(경기ITP등),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단)
- 지정면적** 1.73km² (기술핵심기관 0.84km², 배후공간 0.89km²)

육성방향

- 특화분야**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협동로보틱스 부품/ 고감도 IoT 센서/지능형 임베디드 모듈,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구상 R&D ↔ BI ↔ Post BI 연계 공간 운영



지정범위



1 신기술 실증특례란?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하여 전(全)분야의 신기술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존·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어정리 [*출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실증 :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

| 연구개발특구법 대비 他규제샌드박스 기능 비교대조 | | | | |
|----------------------------|-------------------------|---|------------------|----------------|
| 구분 | 연구개발특구법 과기1차관 | 지역특구법 중기부 | 정보통신융합법 과기2차관 | 산업융합촉진법 산업부 |
| 대상지역 | 연구개발특구 (기존5개, 강소12개) | 국제자유특구 | 전국 | |
| 적용분야 | 전 분야 | 지역별 특정한 혁신산업/사업 | ICT 융합분야 | 산업융합분야 |
| 활용주체 | 공공기관, 연구자 (기업) | 신기술·제품·서비스 전문기업 | | |
| 규제 | 신속처리 | 적용 (허가필요여부 및 요건 등 규제확인 요청 시 30일 내 회신) | | |
| 특례 | 임시허가 | 적용 (근거법령 없거나 부적합 시 안정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임시허가) | | |
| 제도 | 실증특례 | 적용 | | |
| 차별성 | 기술성숙 및 개발 목적 실증특례 |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 |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 도입

특구 내 밀집되어있는 혁신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술기반 초기·창업기업(연구소기업 등)도 실증특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 행정, 실증사업 등을 연계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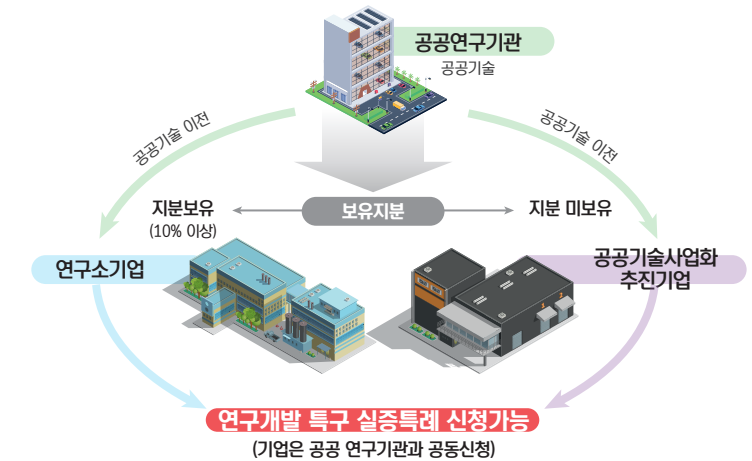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안) 주요내용

- 제도** : 연구개발 전(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
*명목적 실증 개용 적용 시제품 시장 검증 뿐만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체 과정
- 행정** : 특구재단 지역본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특구 별 실증 원스톱 지역 현장밀착형 지원
· 기술이전 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지원
- R&D** :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관, 기업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R&D 예산 지원
- 데이터** : 기존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사업화과제와 실증특례 데이터를 연계한 연구개발특구 실증 데이터 환류체계 구축
- 인프라** : 연구개발특구 실증 인프라 통합 허브 구축(온라인)
· 필요 시 실증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에 실증단지 개발 포함)하여 공동 활용

2 신청대상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①공공연구기관 또는 ②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



3 유효기간

2년 이내 + 2년 이내 연장 가능 (1회 한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신청

- 실증특례 유효기간: 2년 이내
- 실증특례 연장기간: 2년 이내 연장 가능 (1회 한정)

- 실증특례 연장 신청서
-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 별도의 배상방안)
-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여부를 적은 서류

4 필요서류

- ① 실증특례 신청서 ② 실증특례 계획서 ③ 실증특례 신청 사유서 ④ 안전성 확보 계획서

5 실증특례 지정절차

- 실증특례 신청** : 수요자 → 과기정통부
· 실증특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과기정통부(특구재단)으로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과기정통부 → 규제소관부처
· 과기정통부 - 접수된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소관 기관으로 통보
· 규제소관부처 - 30일(자료보완 요청 시 90일) 이내에 규제 유무에 대해 회신
-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 과기정통부
· 실증특례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진행
· 실증특례 지정관련 사전 심의·의결(부가 조건 설정 등) 및 특구위원회 상정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 과기정통부
· 실증특례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실증특례 지정** : 과기정통부
· 관보 고시 및 관련자에 통보

6 추가지원

| 구분 | 내용 |
|---------------|---|
| 법률컨설팅 | 실증특례 수요기관에 대한 사전법률상담, 실증특례 대상과제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법률일체에 대한 법률컨설팅 지원 |
| 실증 R&D |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시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비 지원 |
| 책임보험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인적·물적 손해와 관련한 배상책임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 |
| 첨단기술기업 |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분야로 인정하여, 해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추진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특구기업으로 세제 감면,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 보유 |
| 공공(연)-기업 매칭지원 | 실증특례 수요가 있는 특구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증가하여 실증특례 신청 지원 |

7 기대효과

- ➔ 연구개발자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환경 제공
- ➔ 규제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증기회 제공
- ➔ 공공(연)이 보유한 공인실험시설의 고도화, 유휴시설의 테스트베드화 추진
- ➔ 기술적·사회적 변화속도에 맞춰 관련 규제 법령의 정비 추진